성동구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검토보고서

2018. 2. 26.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성동구청장

나. 제출일자: 2018. 2. 9.

다. 회부일자: 2018. 2. 13.(의안번호: 1205)

2. 제안이유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 및 다양한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청년지원센터」를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성동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개요

○ 사업기간: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시설: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 위탁대상: 청년대상 시설 운영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 현장 활동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 단체

○ 추진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심사 선정

○ 선정방식: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 득점자 선정

○ 위탁사무: 청년교류 활성화, 청년활동 역량강화·교육, 시설

관리 및 운영

○ 운영예산: 40,000천 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

나. 시설현황

○ 위　　치: 성동구 뚝섬로1길 2(성수동1가) 성동상생센터 4층

○ 규　　모: 전용면적 13.42㎡

○ 주요시설: 사무공간(교육실 및 회의실은 공용 공간 공유)

○ 개 관 일: 2017. 7. 4.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제3항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지역청년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과 청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등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의 협업 필요

○ 지역청년 단체(모임) 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써 청년지원센터의 활성화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제3항(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예산 조치

○ 운영예산: 연 40,000천 원(구비)

○ 세부내역: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예산확보: 2018년분 기 확보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에 근거하여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으로,

○ 청년지원센터는 그 운영의 성격 상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 및 효과적인 청년 지원 정책 추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년 운영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운영비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